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1996. 10.
제출자 : 이천시장

제안이유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를 제정하여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사용료 징수(안 제10조제1항).
- 나.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안 제10조제3항).
- 다.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시 점용료 징수(안 제14조제1항).
- 라.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 공사비,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함(안 제15조제1항).
- 마.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안 제15조제2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사람,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 구역안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 이설 · 개조 ·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을 하였거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때에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전설업법에 의한 상 · 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 중지 ·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 하천수 · 온천수 · 해수 · 기타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이천시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일시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하수관거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 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용료) ①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되었을 경우에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언기

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통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4조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 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률보상비를 포함한다), 공사비(부대공사비를 포함한다),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조성,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는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의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 변소에 발생하는 오수를 오·우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납부방법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가산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

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정수한다.

제17조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사용료 ·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 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0조 (자료제출명령등) 시장은 사용료 · 점용료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제22조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하수도사용료 요율표(제10조관련)

구 분 업 종	1개월 기본요금		초과 사용 요율	
	기본하수량 (m ³ /월)	기본요금 (원)	사용구분 (m ³ /월)	m ³ 당 단가 (원)
일반용	10		11-30 31-50 51이상	
영업종	1 종	10	11-30 31-50 51이상	
	2 종	10	11-30 31-50 51-100 101-500 500이상	
특탕용	1 종	1m ³ 당 원		
	2 종	200	201-300 301-500 501이상	
공공용	1m ³ 당 원			
공중용	1m ³ 당 원			
산업용	1m ³ 당 원			
일시사용	1m ³ 당 원			

주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높은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별표 1의1]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점 및 지압업소 · 공용급수전 ·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영업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1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체육시설에 한함) </td></tr> <tr> <td style="text-align: right;">2종</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점객업 · 공연장 ·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 포함) · 차량판매정비(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제외)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의료기관 제외>), 오피스텔 · 도살장, 정육점 · 양조업, 제방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 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 제조 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괴역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td></tr> </table>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체육시설에 한함)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점객업 · 공연장 ·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 포함) · 차량판매정비(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제외)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의료기관 제외>), 오피스텔 · 도살장, 정육점 · 양조업, 제방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 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 제조 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괴역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체육시설에 한함)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점객업 · 공연장 · 숙박업 ·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 포함) · 차량판매정비(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제외) ·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화훼, 식목업 · 빌딩(다른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의료기관 제외>), 오피스텔 · 도살장, 정육점 · 양조업, 제방업, 제분업(방앗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 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 제조 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괴역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업 종		구 분 내 용
영업용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 (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 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 의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면실후 건축 하는 경우에 한함)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 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숙탕용	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 장에 대한 급수) ·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 육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공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 업 포함) · 학교 · 정당 ·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 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 부속병원) · 병영 · 신문사, 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공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 두채 재배업소

-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
종을 적용한다.
2.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 한다.

[별표 2]

수질 하수도 사용료(제10조관련)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용어풀이

- BOD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 S S : 부유물질

사용료 산정기준

- o 수질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 o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o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에 의거 산정한다.

수질 하수도 사용

- o 수질 하수도 사용료 = 오염부하량 \times 1/1,000 \times kg단가 \times 1일 조업시간 \times 30일

* 오염부하량 : [수질초과농도(mg/l) \times 시간당 폐수배출량(m^3)]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별표 3)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제14조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 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8

[별표 4]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제15조관련)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text{하수종말처리시설총사업비} \times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m}^3/\text{일)}}{\text{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text{하수관거 총사업비} \times \frac{\text{개발지역내 발생하수량(m}^3/\text{일)}}{\text{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m}^3/\text{일})} \times \alph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오수정화시설의 하수발생량 산정은 환경부고시를 적용한다.

$$\alpha :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완공 후 평균 도매물가상승율 } n}{100})$$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년수